

제348회 서초구의회(임시회)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[유 지 웅 의원 대표발의 (의안번호 제475호)]



2026. 3.

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
(행정복지위원회)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475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	
발의자	유지웅·박미정·이은경 김지훈·안병두·신정태 하서영 의원(7명)	발의연월일	2026.03.13.
위원회	운영위원회	전문위원	김성훈

I 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은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이를 ‘해당액’이 아닌 ‘상당액’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규정 (안 제2조)
- 나. 부정 수령 여비 환수액 및 징수액의 기준 규정 (안 제4조)
- 다. 상시출장 공무원 기준 규정 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6. 03. 17. ~ 2026. 03. 22.(5일), 의견없음

II

검토의견

1. 개정취지

-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출을 통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“상당액”이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대한 정비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2. 주요 조례안 검토

- 안 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제2항은 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바, 조문의 중복적 표현을 정비하고자 별표 2를 준용하고, 제3항을 삭제하여 그 내용을 제2항의 본문 후단에 명시함으로써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안 제4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)는 관계법령에서 거짓이나 부

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상당액으로 명시하고 있음.

- 상당액은 ‘어지간히 많은 금액’ 또는 ‘어떠한 기준량에 알맞은 금액(해당액)’을 뜻하는 명사로 국립국어원에서 표준화 용어로서 “해당액”으로 정리되어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“상당액”의 불분명한 용어를 “해당액”이라는 용어로 정리할 것을 권고한 바, 안 제4조의 용어 정리 및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됨.
- 안 별표 2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)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관련으로 불필요한 지급 대상을 정비하였음.
- 그 밖에 띄어쓰기·용어정리(안 제2조, 안 제5조),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(별표 1) 등이 정비되었음.

4. 종합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출을 위해 “상당액”이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용어로의 정비 및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고,
-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